

길음아지트 마을활력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 북 구
(주민공동체과)

길음아지트 마을활력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안 번호	36
----------	----

제출년월일 : 2022. 9.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 가. 마을활력소는 누구나, 언제나, 모두가 함께 소통하고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동체 활성화 공간으로,
- 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운영주체가 지역주민 및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양질의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 다.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인건비, 관리비, 운영비)를 운영주체의 수입금(사용료·수수료·비용)으로 충당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지속가능한 자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위탁하고자
- 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성북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현황

○시 설 명: 길음아지트 마을활력소

○소 재 지: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지하234(길음 지하보도 내)

○시설규모: 140.25m²

○공간구성: 연습실, 프로그램실, 휴게실, 사무실, 창고

나. 주요 내용

- 위탁사무명 : 길음아지트 운영·관리 사무
- 위탁기간 : 3년(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 수탁기관 선정방법: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4호 자항
 -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6413호(2020.06.25.)와 관련하여 모두의공간 마을활력소(리모델링형) 심사 결과 운영주체 선정 통보
- 위탁사무의 범위
 - 마을활력소의 운영 및 관련 사무
 - 공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 기타 마을활력소 시설에 대한 안전 등 전반적인 유지 관리
- 위탁시기: 2023년 1월 이후
- 소요예산 : 없음(사용료·수수료·비용 등 수입금으로 충당)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18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제27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4호 자항

○ 추진 필요성

- 누구나, 언제나, 모두가 함께하는 마을공동체 소통공간을 활성화시키고 협력과 상생을 통한 공동체 활동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 주도형 운영보다는 지역상황에 능통한 기관이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며,
- 전문적인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비영리법인이 주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 또한, 자율성과 자립성을 기반으로 내실 있는 민간위탁을 통해 주민 모두의 공간으로서 책임성을 강화하고 자립적 운영방식을 통해 예산절감에 기여할 수 있으며, 공동체 공간은 주민들간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므로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18조

제18조(마을활력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주민자치, 공간공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활력소"를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이 "마을활력소"를 운영할 경우, 시장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공유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요율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⑤ "마을활력소" 운영주체는 "마을활력소"를 주민자치, 공간공유,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이 달성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⑥ "마을활력소"는 지역주민 주도로 조성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사업의 계획 수립과 실행

2. 지역주민 참여 확대와 소통

3. 마을공동체 활성화 제안과 실행

4.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제2조

제21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일상적인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공간적 개념과 환경·문화 등을 공유하는 사회적 개념을 총칭한다.
2. "마을만들기"란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 스스로가 마을환경의 물리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주민간의 관계와 활동을 창조하는 것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생활환경의 문제를 주민이 함께 해결하고 주민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3. "마을만들기 사업"이란 주민 스스로 마을만들기를 장려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민조직 발굴, 주민역량 강화, 주민활동 지원 등의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

○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제27조

제27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비의 교부방법 및 집행,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5조(민간위탁사무 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자활·취업·창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3. 문화·예술·영상·도서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교육·교양·체육·공원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5. 보건·건강증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사회적기업, 공정무역, 마을만들기 지원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7. 보훈 회관 운영 및 관련 사무
8. 그 밖에 청소, 경비, 교통, 주차장 운영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자.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